

서울특별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·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139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3년 8월 14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「대도시권 광역 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('23.5.16. 시행)으로 인하여 광역교통시설 부담금(이하 “부담금”) 체납 시 징수하는 가산금 부과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, 부담금의 부과·징수에 대한 사무처리 비용으로 자치구에 교부하고 있는 징수교부금의 차등 교부 근거를 신설하여 부담금 징수율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가산금 징수 비율 변경 및 산정방식 근거 신설(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)
- 나. 자치구 징수교부금 차등 교부 근거 신설(안 제11조제2항 단서 및 별표)
- 다. 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승인 등 내역서 서식 수정(안 별지 제4호 및 제5호 서식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대도시권 광역 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나. 예산조치 : 협의완료(예산담당관 협조)

다. 협의사항

- (1) 법무담당관(규제심사): 규제사항없음
- (2) 예산담당관(비용추계)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
- (3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: 원안동의
- (4) 양성평등담당관(성별영향평가): 개선사항 없음
- (5) 시민협력과(공공갈등진단): 갈등사항없음
- (6) 조직담당관(위원회 신설): 해당없음
- (7)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·본부·국 검토의견:
해당없음

라. 기타

- (1) 입법예고 (2023. 6. 15. ~ 7. 5.) 결과: 의견없음
- (2) 신·구조문 대비표: 붙임

※ 작성자 : 교통정책실 교통정책과 양수빈(☎2133-2253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·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·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·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위임된”을 “위임한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개량”을 “개량,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등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「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7호 서식(전산용1)에 따른”을 “「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8호 서식 및 「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 별지 제8호 서식을 준용한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17조제2항에 따라”를 “제17조제2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제5조 중 “영 제17조제3항”을 “법 제11조의4제3항 및 영 제17조제3항”으로 한다.

제6조제2항제1호 중 “회수”를 “횡수”로 한다.

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“부담금의 100분의 3”을 “부담금액의 100분의 1”로, “부가한다”를 “징수한다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체납된 부담금에 납부 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과 1일 10만분의 22의 율을

곱한 금액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. 이 경우 가산금의 총액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의 3을 초과할 수 없다.

제11조제2항 중 “구청장에게”를 “자치구에”로 하고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부담금의 연간 징수율이 50% 이상인 자치구에 대하여는 별표에서 정한 교부금을 해당 자치구에 교부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가산금에 관한 적용례)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5월 16일 이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결정·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[별표]

부담금 징수율에 따른 교부금(제11조제2항 단서 관련)

부담금 징수율	교부금
50퍼센트 이상 60퍼센트 미만	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6
6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	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8
70퍼센트 이상	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10

※ 부담금 징수율(%) = $\frac{\text{현년도 징수액}}{(\text{과년도 미수납액} + \text{현년도 징수결정액})} \times 100$

[별지 제4호서식]

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승인·인가·준공검사 등 내역서
 (택지개발사업, 도시개발사업, 아파트지구개발사업, 대지조성사업)

1. 부담금 부과 대상사업 시행자에 관한 사항

성명		생년월일 (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)	
상호		전화번호	
사무소 소재지			

2. 승인·인가·준공검사 등 통보사항

대상사업명					
사업지위치		대지면적(m ²)		세대수(세대)	
도시계획현황	지역()	지구()		구역()	
부과근거 규정	<input type="checkbox"/> 택지개발사업, <input type="checkbox"/> 도시개발사업, 주택건설촉진법(<input type="checkbox"/> 아파트지구개발사업 <input type="checkbox"/> 대지조성사업)				
통보사유	<input type="checkbox"/> 최초 승인·인가·허가 <input type="checkbox"/> 변경 승인·인가·허가 <input type="checkbox"/> 준공검사 신청 <input type="checkbox"/> 사용검사 신청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)				

3.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면적

구분	중전(최초)내역(m ²)	변경내역(m ²)
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여 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의 지구, 구역 또는 사업지역에서 시행되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,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		
법 제11조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의 사업 중 4년 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「공공주택 특별법」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「주택법」 제2조제6호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		
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78조에 의한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		
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중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제2조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·증설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		
① 계		

주 :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내역은 「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11조의2제1항에 따름

4. 개발면적 내역

구 분		종전(최초)내역(m ²)	변경내역(m ²)
② 전체면적			
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면적(①)			
제외면적 (※)	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거나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기부채납하는 용지		
	영 제16조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설을 위한 용지		
	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78조에 의한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건설을 위한 용지		
	공용외 청사용지와 「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」 제1조에 따른 각급학교 용지		
	③ 제외면적 계		
④부과대상 개발면적(②-①-③)			

(※) 제외면적 내역은 「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16조의2제1항에 따름

5. 용적률 내역 : ⑤()%

[적용식]

6. 공제액 세부 내역

구 분	종전(최초)내역(원)	변경내역
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도시철도 또는 철도의 건설 및 개량에 소요되는 비용	원	원
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·구역 또는 사업지역 밖에서 영 제16조의2제4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설치하거나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데 드는 비용	원	원
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주차장, 공영차고지, 간선급행버스체계 또는 환승센터의 구성시설을 설치하거나 개량에 드는 비용	원	원
⑥공제액 총계	원	원

주 : 공제액 내역은 「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16조의2제4항에 따름

7. 부담금 부과액

구 분	종전(최초)내역	변경내역
⑦부담금	원	원
공제액(⑥)	원	원
⑧경감률	()%	()%
최종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액 [(⑦-⑥)×⑧]	원	원

주 : ⑦부담금=표준개발비(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)×부과율(15%)×개발면적(④)×용적률(⑤)/200

주 : ⑧경감률은 「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11조의2제2항에 따름

[별지 제5호서식]

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승인·인가·준공검사 등 내역서
(주택건설사업, 주택재개발사업, 주상복합건물)

1. 부담금 부과 대상사업 시행자에 관한 사항

성명		생년월일 (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)	
상호		전화번호	
사무소 소재지			

2. 승인·인가·준공검사 등 통보사항

대상사업명				
사업지위치		대지면적(m ²)		세대수(세대)
도시계획현황	지역()	지구()	구역()	
부과근거 규정	주택건설사업(□재건축사업 □기타사업), □주택재개발사업, □주상복합건물(20세대이상)			
통보사유	□ 최초 승인·인가·허가 □ 준공검사 신청		□ 변경 승인·인가·허가 □ 기타()	

3.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면적

구분	종전(최초)내역(m ²)	변경내역(m ²)
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여 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의 지구, 구역 또는 사업지역에서 시행되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,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		
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		
법 제11조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의 사업 중 4년 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「공공주택 특별법」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「주택법」 제2조제6호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		
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78조에 의한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		
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중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제2조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·증설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		
① 계		

주 :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내역은 「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11조의2제1항에 따름

4. 건축연면적 내역

구 분		종전(최초)내역(㎡)	변경내역(㎡)
② 총 건축연면적			
부담금 면제대상 건축연면적(①)			
제외면적(※)	지하층(주거용인 경우를 제외)과 건축물안의 주차장		
	공용외 청사와 「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」 제1조에 따른 각급학교		
	「주택법」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		
	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(「주택법」 제2조제13호 및 같은 조 제14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)		
	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른 재개발·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구역 내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		
	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구역 내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		
	「주택법」에 따른 리모델링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의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		
	「주택법」 제2조제6호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임대주택의 연면적		
③ 제외면적 계			
부과대상 건축연면적(②-①-③) 또는 주상복합건물인 경우 주택인 시설의 건축연면적			

(※) 제외면적 내역은 「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16조의2제6항에 따름

5. 부과대상 건축연면적 세부내역

(부과대상 건축연면적 세부내역 작성시 내용이 초과되면 별지로 작성하여 통보)

5-1. 주택부문 건축연면적 세부내역

[종전(최초)내역]

구 분	④공급면적(㎡)	층수(층)	⑤세대수(세대)	⑥면적계(㎡)(④×⑤)	⑦표준건축비(천원/㎡)	⑧부과율	부담금(원)(⑥×⑦×⑧)
계					-	-	

[변경내역]

구분	④ 공급면적 (㎡)	층수 (층)	⑤ 세대수 (세대)	⑥ 면적계(㎡) (④×⑤)	⑦ 표준건축비 (천원/㎡)	⑧ 부과율	부담금(원) (⑥×⑦×⑧)
계					-	-	

5-2. 주택이외의 부문 건축연면적 세부내역

구분		종전(최초)내역					변경내역				
전용 면적	⑨ 부과율 (%)	⑩ 건축 연면적 (㎡)	⑪ 호수 (호)	⑫ 면적계 (㎡) (⑩×⑪)	⑬ 표준 건축비 (천원/㎡)	부담금(원) (⑨×⑫×⑬)	⑭ 건축 연면적 (㎡)	⑮ 호수 (호)	⑯ 면적계 (㎡) (⑭×⑮)	⑰ 표준 건축비 (천원/㎡)	부담금(원) (⑨×⑯×⑰)
계							계				

6. 공제액 세부 내역

구 분	종전(최초)내역(원)	변경내역
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도시철도 또는 철도의 건설 및 개량에 소요되는 비용	원	원
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·구역 또는 사업지역 밖에서 영 제16조의2제4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설치하거나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데 드는 비용	원	원
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주차장, 공영차고지, 간선급행버스체계 또는 환승센터의 구성시설을 설치하거나 개량에 드는 비용	원	원
⑭공제액 총계	원	원

주 : 공제액 내역은 「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16조의2제4항에 따름

7. 부담금 부과액

구 분	종전(최초)내역	변경내역
⑮부 담 금	원	원
- 주택부문 부과액	원	원
- 주택이외부문 부과액	원	원
공 제 액(⑭)	원	원
⑯경 감 률	()%	()%
최종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액 $[(⑮ - ⑭) \times ⑯]$	원	원

주 : ⑯경감률은 「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11조의2제2항에 따름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, 같은 법 제11조의7에 따라 서울특별시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위임한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“부담금”이란 「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하여 부담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말한다. 2. ~ 3.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1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개량,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등----- 2. ~ 3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4조(부담금의 부과) ①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법 제11조의4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는 「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7호 서식(전산용1)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부</p>	<p>제4조(부담금의 부과) ① ----- ----- ----- 「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8호 서식 및 「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</p>

한다.

② ~ ③ (생략)

제5조(부담금의 납부기한 연기) 납부 의무자가 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납부 기한을 연기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납부 연기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6조(부담금의 분할납부) ① (생략)

② 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의 신청은 부담금의 부과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되,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를 허용할 수 있다.

1. 납부 회수는 2회로 한다.

2. 3. (생략)

제7조(부담금의 연체에 대한 가산금) 시장은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 제11조의4제5항에 따라 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가한다.

<신설>

칙」 별지 제8호 서식을 준용한 -- --.

② ~ ③ (현행과 같음)

제5조(부담금의 납부기한 연기) --- ----- 법 제11조의4제3항 및 영 제17조제3항-----

-----.

제6조(부담금의 분할납부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.

1. --- 횡수-----.

2. 3. (현행과 같음)

제7조(부담금의 연체에 대한 가산금) ① -----

----- 부담금액의 100분의 1-----
----- 징수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체납된 부담금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과 1일 10만분의

제11조(권한의 위임 등) ① (생략)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치구청장이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의 부과·징수에 대한 사무처리 비용으로 해당 구청장에게 교부한다.

<단서 신설>

[별지 제4호서식]

1. ~ 2. (생략)
3.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면적

구분
<u><신설></u>
<u>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</u>

22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. 이 경우 가산금의 총액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의 3을 초과할 수 없다.

제11조(권한의 위임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 자치구에 ----- . 다만, 부담금의 연간 징수율이 50% 이상인 자치구에 대하여는 별표에서 정한 교부금을 해당 자치구에 교부한다.

[별지 제4호서식]

1. ~ 2. (현행과 같음)
3.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면적

구분
<u>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여 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의 지구, 구역 또는 사업지역에서 시행되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,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</u>
<u>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른</u> -----

주택건설사업중 5년이상 임대하기 위한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
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

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에 의한 시설을 시행하는 자가 동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

① 계

주 :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내역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함

4. 개발면적 내역

구 분	
제외면적 (※)	국가 또는 지자체에 무상귀속 또는 기부채납하는 용지
	국민주택규모의 임대주택의 건설을 위한 용지
	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건설을 위한 용지
	공용의 청사용지와 학교용지 확보에관한특별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 용지

법 제11조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의 사업 중 4년 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「공공주택 특별법」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「주택법」 제2조제6호의 -----을 건설하는 사업

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78조에 의한 ----- 조성 및 주택의 건설

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중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·증설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-----

① 계

주 : ----- 「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

4. 개발면적 내역

구 분	
제외면적 (※)	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거나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-----
	영 제16조에 따른 -----
	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78조에 따른-----

	공용의 청사용지와 「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」 제1조에 따른 -----

③ 제외면적 계
④부과대상 개발면적(②-①-③)
(※) 제외면적 내역은 <u>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</u> 에 의함

5. (생략)

6. 공제액 세부 내역

구분
도시철도 또는 철도의 건설 및 개량 비용
지구·구역 또는 사업지역밖의 도로설치 비용
<신설>
⑥공제액 총계

주 : 공제액 내역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함

7. 부담금 부과액

구분
⑦부담금
공제액(⑥)
⑧경감율
최종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액 [(⑦-⑥)×⑧]

주 : ⑦ (생략)
 주 : ⑧경감율은 「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11조의2제2항에 의함

[별지 제5호서식]

1. ~ 2. (생략)

③ 제외면적 계
④부과대상 개발면적(②-①-③)
(※) ----- 「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16조의2제1항에 따름

5. (현행과 같음)

6. 공제액 세부 내역

구분
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도시철도 또는 철도의 건설 및 개량에 소요되는 비용
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·구역 또는 사업지역 밖에서 영 제16조의2제4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설치하거나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데 드는 비용
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주차장, 공용차고지, 간선급행버스체계 또는 환승센터의 구성시설을 설치하거나 개량에 드는 비용
⑥공제액 총계

주 : ----- 「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16조의2제4항에 따름

7. 부담금 부과액

구분
⑦부담금
공제액(⑥)
⑧경감률
최종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액 [(

주 : ⑦ (현행과 같음)
 주 : ⑧경감률은 「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11조의2제2항에 따름

[별지 제5호서식]

1. ~ 2. (현행과 같음)

3.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면적

구 분
<신 설>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
주택건설사업중 5년이상 임대하기 위한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
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에 의한 시설을 시행하는 자가 동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
① 계
주 :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내역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함

4. 건축연면적 내역

3.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면적

구 분
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여 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의 지구, 구역 또는 사업지역에서 시행되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,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
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른 -----
법 제11조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의 사업 중 4년 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「공공주택 특별법」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「주택법」 제2조제6호의 -----을 건설하는 사업
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78조에 의한 ----- 조성 및 주택의 건설
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중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·증설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-----
① 계
주 : ----- 「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

4. 건축연면적 내역

구 분	
② 총 건축연면적	
부담금 면제대상 건축연면적(①)	
제외면적 (※)	지하층(주거용인 경우 제외)과 건물안의 주차장
	공용의 청사와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
	「주택법」 제2조 제13호 : 부대시설 중 관리사무소 제14호 : 복리시설 중 주민공동시설
	재개발·재건축사업의 조합원에게 분양되는 건축연면적
	<신 설>
	<신 설>
	<신 설>
③ 제외면적 계	
부과대상 건축연면적(②-①-③) 또는 주상복합건물인 경우 주택인 시설의 건축연면적	
(※) 제외면적 내역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특별법시행령 제16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함	
5. (생략)	

구 분	
② 총 건축연면적	
부담금 면제대상 건축연면적(①)	
제외면적 (※)	-----건축물 -----
	----- 「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조에 따른 ----- 「주택법」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
	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조 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(「주택법」 제2조제13호 및 같은 조 제14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)
	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른 재개발·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구역 내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
	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구역 내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
	「주택법」에 따른 리모델링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의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
	「주택법」 제2조제6호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임대주택의 연면적
③ 제외면적 계	
부과대상 건축연면적(②-①-③) 또는 주상복합건물인 경우 주택인 시설의 건축연면적	
(※) : ----- 「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16조의2 제6항에 따름	
5. (현행과 같음)	

6. 공제액 세부 내역

구 분
<p>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도시철도 또는 철도의 건설 및 개량에 소요되는 비용</p>
<p>사업이 시행되는 지구·구역 또는 사업지역 밖에서 도로를 설치하는 비용</p>
<p>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주차장, 공영차고지, 간선급행버스체계 또는 환승센터의 구성시설을 설치하거나 개량에 드는 비용</p>
<p>⑭공제액 총계</p>
<p>주 : 공제액 내역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함</p>

7. 부담금 부과액

구 분
<p>⑮부담금</p>
<p>- 주택부문 부과액</p>
<p>- 주택이외부문 부과액</p>
<p>공 제 액(⑭)</p>
<p>⑯경감율</p>
<p>최종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액 $[(⑮ - ⑭) \times ⑯]$</p>
<p>주 : ⑯경감율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함</p>

6. 공제액 세부 내역

구 분
<p>해당 -----</p>
<p>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·구역 또는 사업지역 밖에서 영 제16조의2제4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설치하거나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데 드는 비용</p>
<p>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주차장, 공영차고지, 간선급행버스체계 또는 환승센터의 구성시설을 설치하거나 개량에 드는 비용</p>
<p>⑭공제액 총계</p>
<p>주 : ----- 「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16조의2제4항에 따름</p>

7. 부담금 부과액

구 분
<p>⑮부담금</p>
<p>- 주택부문 부과액</p>
<p>- 주택이외부문 부과액</p>
<p>공 제 액(⑭)</p>
<p>⑯경감률</p>
<p>최종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액 $[(⑮ - ⑭) \times ⑯]$</p>
<p>주 : ⑯경감률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함</p>

「서울특별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·징수 및
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광역교통시설부담금(이하 '부담금') 가산금 비율 및 산정방식 변경에 따른 수입감소
- 부담금 징수실적별 자치구 징수교부금 차등 교부에 따른 지출증가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 의원·위원회·시장·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부담금 체납 시 징수하는 가산금 비율 및 산정방식이 변경되어 세입 일부 감소가 예상되나 가산금 세입은 전체 세입 대비 그 액수가 크지 않고, (최근 3년간 연평균 가산금 세입 약 4,700만원)
※ 가산금 (기존) 체납금액의 3% → (변경) 1% + 1일당 0.00022%
- 부담금 징수교부금 교부기준 변경으로 징수율이 우수한 자치구에 대하여 지급하는 교부금 비율이 향상되어 비용 일부 증가가 예상되나, 징수율 유도를 통해 비용 대비 시 세입 증대 효과가 더욱 커 비용을 상쇄하기에 비용 추계서 미첨부 대상에 해당함(22년 대비 징수율 1% 증가시 교부금 제외 약 2억 3천만원 순 세입 증가 예상)
※ 징수교부금 (기존) 징수액의 3% 일괄교부 → (변경) 징수액의 3~10% 차등교부

4. 작성자

-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주무관 양수빈(02-2133-2253)